

-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-

# 검 토 보 고 서

(바 이 오 산 업 국)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 목 차

1. 세입예산안

2. 세출예산안

- 바이오산업과
- 화장품천연물과
- 바이오산단지원과

3. 검토의견

##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

### 1. 세입예산안

#### 가. 총괄

-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365억 5,1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으며,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5조 8,864억 2,025만원의 0.62%에 해당하는 규모임.

#### 【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안 】

(단위 : 천원, %)

구분	합계	구성비	기정액	구성비	제1회 추경	증감률
충청북도	5,886,420,251		5,511,956,745		374,463,506	6.79
바이오산업국	36,551,833	100	36,551,833	100	-	-
바이오산업과	30,801,833	84.27	30,801,833	84.27	-	-
화장품천연물과	5,750,000	15.73	5,750,000	15.73	-	-
바이오산단지원과	-		-		-	-

### 2. 세출예산안

#### 가. 총괄

-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976억 6,727만원 대비 6.65%인 65억이 증액된 1,041억 6,7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,
-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5조 8,864억 2,025만원의 1.77%에 해당하는 규모로,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6.79%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.

### 【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안 】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합 계	구성비	기정액	구성비	제1회 추경	증감률
충청북도	5,886,420,251		5,511,956,745		374,463,506	6.79
바이오산업국	104,167,274	100	97,667,274	100	6,500,000	6.65
바이오산업과	67,572,890	64.87	67,572,890	69.19	-	-
화장품천연물과	14,758,663	14.17	14,758,663	15.11	-	-
바이오산단지원과	21,835,721	20.96	15,335,721	15.70	6,500,000	42.38

○ 재정별로 살펴보면,

- 정책사업비는 1,015억 7,1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.83%인 6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,
-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

### 【 재정별 세출예산안 규모 】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합 계	구성비	기정액	구성비	제1회 추경	증감률
계	104,167,274	0	97,667,274	100	6,500,000	6.65
정책 사업비	101,571,200		95,071,200	97.34	6,500,000	6.83
재무활동비	2,413,750		2,413,750	2.47	-	-
행정운영경비	182,324		182,324	0.19	-	-

### 나. 소관 부서별 내역

○ 바이오산업과 / 화장품천연물과

- 바이오산업과 세출예산은 바이오산업국 예산안의 3.09%인 675억 7,289만원이며, 화장품천연물과는 바이오산업국 예산안의 0.68%인 147억 5,8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

○ 바이오산단지원과

- 바이오산단지원과과 세출예산은 바이오산업국 예산안의 20.96%로  
기정예산액 153억 3,572만원 대비 65억원(42.38%)이 증액된  
218억 3,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,
- 주요내용은 충북 청주전시관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른 건축  
공사비 및 단지조성비 등 계상임

**【 바이오산단지원과 주요 증감 내역 】**

(단위 : 천원, %)

사 업 명	1회 추경	기정액	비교증감	증감률
충북 청주전시관 건립(전환사업)	21,500,000	15,000,000	6,500,000	43.33

3. 검토의견

-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계적  
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,
-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협약에서 정한 청주시와의 사업비 분담비  
율(50:50)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  
산 편성으로 판단됨.